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윤권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4. 7. 5.

발 의 의 원 : 윤권근, 김대현,
김지만, 김정옥,
김태우, 권기훈,
류종우, 손한국,
이영애, 이태손,
조경구, 정일균,
하병문, 황순자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감소와 함께 광역시 등 대도시 내에서도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인구감소지역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구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

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2. 기초·기본학력 강화
3. 저소득·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4. 학교 교육여건 개선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교육지원계획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교육지원 사업)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실, 도서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보
2. 교재·교구 지원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 ④ (생략)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3. 해당 지역의 현안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 ⑫ (생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 18. (생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